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 [고성미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36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11. 15.

발 의 자 : 고성미 의원

찬 성 자 : 이인식 의원

도병두 의원

#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자치입법 활성화 및 의회운영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정책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·기능 및 구성(안 제2조 및 제3조)
- 다.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 등의 직무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위원회의 회의(안 제6조)
- 마. 자문 및 의견청취 등(안 제7조 및 제8조)
- 바. 실비보상(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3. 11. 16. ~ 2023. 11. 22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설치하고,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
2.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·조사·분석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
3.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
4.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5. 그 밖에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의원의 의정활동 및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

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장과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법조계, 세무·회계, 도시계획, 건축·건설, 교통, 사회복지, 교육계, 문화·예술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
2.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

3. 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·보존

3.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

4.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위원의 해촉)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2. 위원 본인이 사임할 경우
3.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, 자료,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도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문) ①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하여 전문가

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,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, 토론회,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(실비보상)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, 조사·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자문의뢰 신청서

자문종류				
제 목				
자문위원				
자문일시				
의뢰의원	소 속		성 명	
<u>자문의뢰내용</u>				

- 1) '자문종류'는 서면의뢰, 면담의뢰 및 전화의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2) '제목'은 의뢰내용의 주제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.
- 3) '자문일시'는 면담의 방식일 경우에는 면담일시, 전화자문일 경우에는 전화자문 일시, 서면자문일 경우에는 서면요구 제출일시를 기재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